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강간죄 등을 이 법으로 이관 〉
■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038호)

2025.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참고사항	1
IV. 검토의견	3
1.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강간죄 등을 이 법으로 이관	3
※ 참고자료	1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지영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5. 2. 10.
3. 회 부 일 : 2025. 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그중 아동·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의 체계 일관성이 결여된 상황임.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이 법으로 옮기는 등 법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20조).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강간죄 등을 이 법으로 이관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7조¹⁾에서 규정하고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현 행	개 정 안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현행	개정안
<u>한다.</u> 1. <u>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u> 2. <u>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u> ③ <u>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④ ~ ⑥ (생략)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u>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u>	1. <u>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2의 죄를 범한 자: 7년 이상의 유기징역</u> 2. <u>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2의 죄를 범한 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u> ③ <u>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u> 1. <u>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u> 2. <u>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u>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u>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7조의 죄를 범한 자가-----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u>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② (생략) <u><신설></u>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② (생략)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u>제9조 및 제10조의 죄</u>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②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7조의 죄를 범한 자가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2항·제5항, 제9조 및 <u>제10조의 죄</u>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8조, <u>제9조의 죄</u>

현행	개정안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현재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관련된 형사처벌 규정은 행위 태양, 피해자 유형, 행위 수단 등에 따라 「형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에 규정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법」에서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²⁾ 및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³⁾를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⁴⁾를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2)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3)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⁵⁾,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⁶⁾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구성요건적 본질이 같은 처벌규정들이 「형법」 및 특별법에 혼재되어 있다 보니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피해자 유형 등에 따라 각기 다른 법을 적용받는 경우가 발생함. 예컨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제3항⁷⁾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⁸⁾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이면 보다 높은 법정형을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7조제3항⁹⁾을 적용받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됨.

<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 법정형 규정 >

구성요건	「성폭력처벌법」 (13세 미만)	「청소년성보호법」 (19세 미만)
「형법」 제297조(강간) ¹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제7조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7조제1항)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¹¹⁾ * 폭행이나 협박으로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7조제2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7조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¹²⁾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7조제3항)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제7조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 강제추행) ¹³⁾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제7조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제7조제4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하거나 추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제7조제5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제7조제5항)
강간 등 상해·치상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제8조제1항)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제9조)
강간 등 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제9조제1항)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제10조제1항)
강간 등 치사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제9조제3항)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제10조제2항)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처럼 여러 법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처벌규정이 중복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개별 사건이 발생하여 구체적으로 적용법조를 확립할 때 실무적으로 어떠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혼란이 발생하고, 중복적인 조항들이 함께 개정되지 못하는 경우 형벌의 불균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¹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성폭력처벌법」 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이 법으로 옮기는 등 미성년자의 성보호에 관한 조항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적용의 혼란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관련 조항들의 입법연혁¹⁵⁾ 및 당시의 논의, 각 법률의 입법목적, 법문언 등을 살펴보아도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성범죄자의 처벌을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으로 구분하여 규정할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함.

「청소년성보호법」은 다양한 성범죄 피해자 유형 중 아동·청소년

-
- 11)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2)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3)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14) 김용수, “성범죄 규정의 정비방안”, 법학논고, 2022.7, 155~160쪽; 전윤경, “현행 성범죄의 처벌규정 체계의 재구조화 방안”, 이화젠더법학, 2022.11, 3~4쪽; 법률신문 기사, “전문가도 헷갈리는 성폭력범죄 처벌 규정”, 2011.11.8.(URL:<https://www.lawtimes.co.kr/news/60245>) 등 참조.
 - 15) 「성폭력처벌법」 규정은 1997년 8월 법 개정 시, 「청소년성보호법」 규정은 2000년 2월 법 제정 당시 각각 신설되었고, 그 후 큰 내용 변경 없이 법정형이 계속 상향하여 현재에 이름.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참조.

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 그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목적¹⁶⁾으로 특별히 제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성폭력처벌법」상 미성년자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를 통일적·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임.

다만, 해당 법률안은 「성폭력처벌법」에서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므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강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인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8036호)」과 함께 처리되어야 하는바,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관련 규정을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일원화하여 법체계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본 개정안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연계 발의되어 있어 법무부의 신중검토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법무부는 범죄자 처벌 및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내용은 없는 반면 현행법에 맞춰 확립된 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관련 사건 처분 및 결과 분석 등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을 통한 현행법제의 문제점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구체적인 논거를
근거로 법률 개정 필요성 및 개정 실익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신중검토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4

[참고자료]

<「성폭력처벌법」상 13세미만인 자 강간·강제추행등의 죄 주요 입법연혁>

법률 (개정/ 시행일)	법률 제5443호 (1997.8.22./ 1998.1.1.)	법률 제9110호 (2008.6.13.)	법률 제10258호 (2010.4.15.)	법률 제11088호 (2011.11.17.)	법률 제11556호 (2012.12.18./ 2013.6.19.)	법률 제17264호 (2020.5.19.)
주요 개정내용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죄 가중처벌 조문 신설	- 유사강간행위 처벌 신설 - 강간죄, 강제추행죄 법정형 상향 - 강간 등 상해·치상 및 살인·치사 가중 처벌 신설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 법정형 상향 - 처벌법과 보호법 분리 및 이에 따른 조문 순서 변경	강간죄 법정형 상향	강간죄 구성요건을 13세 미만 여자에서 13세 미만 사람으로 변경	강제추행죄 벌금형 삭제
조문	제8조의2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強姦)의 죄를 범한 자는 <u>5년 이상</u>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 설>	제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 ----- <u>7년 이상</u>의 유기징역 -----.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 ----- <u>10년 이상</u>의 유기징역 -----. ② ----- ----- ----- -----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 ----- <u>무기 또는 10년 이상</u>의 징역 -----. ② ~ ⑤ (생략)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 ----- <u>사람</u> ----- ----- -----. ② ~ ⑤ (생략)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생략) ② (생략)

법률 (개정/ 시행일)	법률 제5443호 (1997.8.22./ 1998.1.1.)	법률 제9110호 (2008.6.13.)	법률 제10258호 (2010.4.15.)	법률 제11088호 (2011.11.17.)	법률 제11556호 (2012.12.18./ 2013.6.19.)	법률 제17264호 (2020.5.19.)
		한 자는 <u>5년 이상</u>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 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성기는 제외한다) 의 일부나 도구 를 넣는 행위	--- <u>7년 이상</u> 의 유기징역-----. 1. · 2. (생 략)			
	②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 (強制醜行)의 죄를 범한 자는 <u>1년 이상</u> 의 유기징역 또는 <u>500만원</u> <u>이상 2천만원 이하</u> <u>의 벌금</u> 에 처한다.	③ ----- ----- ----- ---- <u>3년 이상</u> 의 유기징역 또는 <u>1천만원 이상 3천</u> <u>만원 이하의 벌금</u> -----.	③ ----- ----- ----- ---- <u>5년 이상</u> 의 유기징역 또는 <u>3천만원 이상 5천</u> <u>만원 이하의 벌금</u> -----.			③ ----- ----- ----- -- <u>5년 이상</u> <u>의 유기징역</u> 에 -----.
	③ 13세미만의 사람 에 대하여 형법 제 299조(準強姦, 準強 制醜行)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 의 예에 의한다.	④ ----- ----- -----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의 예 -----.	④ · ⑤ (생 략)			④ · ⑤ (생 략)

법률 (개정/ 시행일)	법률 제5443호 (1997.8.22./ 1998.1.1.)	법률 제9110호 (2008.6.13.)	법률 제10258호 (2010.4.15.)	법률 제11088호 (2011.11.17.)	법률 제11556호 (2012.12.18./ 2013.6.19.)	법률 제17264호 (2020.5.19.)
	④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⑤ ----- ----- -----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 . 제9조 (강간등 상해·치상) ① 제5조 제1항, 제6조, 제8조의2 또는 제12조(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8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략)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 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 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개정/ 시행일)	법률 제5443호 (1997.8.22./ 1998.1.1.)	법률 제9110호 (2008.6.13.)	법률 제10258호 (2010.4.15.)	법률 제11088호 (2011.11.17.)	법률 제11556호 (2012.12.18./ 2013.6.19.)	법률 제17264호 (2020.5.19.)
		제10조 (강간 등 살인 · 치사) ① 제5조 부터 제8조까지, <u>제8조의2</u>, 제12조 (제5조부터 제8조 까지 및 제8조의2 의 미수범만 해당 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 (강간)부터 제300조 (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u>사형</u>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생 략) ③ <u>제8조의2</u> 또는 제12조(제8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u>사형</u>, <u>무기징역</u> 또는 10년	<u>제9조</u>(강간 등 살인 · 치사) ① 제3조 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 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 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 (강간), 제297조 의 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 추행)부터 제300조 (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 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 ② (생 략) ③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 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법률 (개정/ 시행일)	법률 제5443호 (1997.8.22./ 1998.1.1.)	법률 제9110호 (2008.6.13.)	법률 제10258호 (2010.4.15.)	법률 제11088호 (2011.11.17.)	법률 제11556호 (2012.12.18./ 2013.6.19.)	법률 제17264호 (2020.5.19.)
		<u>이상의 징역</u> 에 처 한다.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청소년성보호법」 상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등의 죄 입법연혁 >

법률 (개정/시행일)	법률 제6261호 (2000.2.3./2000.7.1.)	법률 제9765호 (2009.6.9./ 2010.1.1.)	법률 제11047호 (2011.9.15./2012.3.16.)	법률 제11572호 (2012.12.18./2013.6.19.)
주요 개정내용	• 청소년(19세 미만 남녀) 강간·강제추행죄 가중 처벌 조문 신설	• 유사강간행위 처벌 신설 • 청소년을 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전부개정함에 따라 조문순서 변경	• 강간죄 구성요건을 여자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변경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 법정형 상향 • 강간 등 상해·치상 및 살인·치사 가중처벌 신설
조문	<u>제10조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①여자 청소년</u>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 (強姦)의 죄를 범한 자는 <u>5년 이상의 유기징역</u>에 처한다. <u><신 설></u> <u>②청소년에 대하여 형법</u>	<u>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여자 아동·청소년</u>----- ----- -----.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u>3년 이상의 유기징역</u>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u>③ 아동·청소년</u> -----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u>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u>----- -----. ② ~ ④ (생략)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 <u>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u>----- ② ----- ----- <u>5년 이상의 유기징역</u> ----- ----- 1. · 2. (생략) ③ -----

법률 (개정/시행일)	법률 제6261호 (2000.2.3./2000.7.1.)	법률 제9765호 (2009.6.9./ 2010.1.1.)	법률 제11047호 (2011.9.15./2012.3.16.)	법률 제11572호 (2012.12.18./2013.6.19.)
	제298조(強制醜行)의 죄를 범한 자는 <u>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 ③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準強姦, 準強制醜行)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u>청소년</u>을 간음하거나 <u>청소년</u>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u>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u>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 ----- ----- -----. ④ <u>아동·청소년</u> ----- ----- ----- -----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u>여자 아동·청소년</u>을 간음하거나 <u>아동·청소년</u>을 추행한 자는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u> ⑥ <u>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u>	⑤ -----<u>아동·청소년</u>을 간음하거나 ----- ----- ----- -----. ⑥ (생 략) <신 설>	----- ----- <u>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u>-----. ④ ~ ⑥ (생 략)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u>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u>에 처한다.

법률 (개정/시행일)	법률 제6261호 (2000.2.3./2000.7.1.)	법률 제9765호 (2009.6.9./ 2010.1.1.)	법률 제11047호 (2011.9.15./2012.3.16.)	법률 제11572호 (2012.12.18./2013.6.19.)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u>사형 또는 무기징역</u> 에 처한다. ②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u>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u> 의 징역에 처한다.